

제341회 정례회
2015.7.14. (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14 (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3일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충청북도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명장 정의 (안 제2조)
- 매년 5명 이내로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안 제3조)
- 명장 자격요건 (안 제4조) 및 추천(안 제5조)
-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및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금액과 기간이 적절한지, 안 제4조제4호의 충청북도 명장과 도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 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명장”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 기술”이란 산업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 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 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

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로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신청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 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과거에 같은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도 지정문화재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장려금은 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명장이 도내에서 관련 분야에 창업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지급은 중단하여야 하며,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이나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4. 숙련 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5.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 대한민국명장의 직종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9호]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분 야	직 종
1.기계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2.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3.화학	화학,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4.전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5.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6.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7.조선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8.항공	항공
9.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0.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11.섬유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12.광업자원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13.정보처리	정보처리
14.농림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15.해양	수산양식, 잠수
16.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17.에너지	에너지
18.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19.환경	환경
20.산업응용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21.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22.서비스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충청북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명장에 대한 기술장려금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술장려금 지급 방법

- 매년 5인 이내 선정하여 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나. 추계 결과 (' 15 ~ ' 18) : 90,000천원(도비)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계
계	10,000	20,000	30,000	30,000	90,000
충청북도명장 지원	10,000	20,000	30,000	30,000	90,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